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78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시 상향된 세액공제율 적용(김태년 의원안)	3

I. 개요

1.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78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6. 12.

(3) 회 부 일 : 2025. 6.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 및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태양광·풍력 보급 목표 상향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투자가 필수적이나, 현재 투자 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시 상향된 세액공제를 적용 (김태년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시 상향된 세액공제를 적용				
○ 유형별 공제율					○ 유형별 공제율				
구분(%)	기본			추가*	구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7.5 ¹⁾	10	10	일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3) (~3년)20%, (4년~)25%				
4) (~3년)25%, (4년~)20%					4) (~3년)25%, (4년~)20%				
					5) (~3년)30%, (4년~)20%				
					○ 적용기한: 2029. 12. 31.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김태년의원안 2025. 6. 12. 발의(의안번호 10783)

□ 개정안은 2029년 말까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에 대하여 대기업 20%, 중견기업 20~30²⁾%, 중소기업 3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

□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①수소에너지, ②연료전지, ③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을 말하고,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①태양에너지, ②풍력, ③수력, ④해양에너지, ⑤지열에너지, ⑥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⑦폐기물에너지 등을 말함.

신·재생에너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 탄소중립 달성을 이끄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음.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지구 평균 지표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장기목표를 규정하였음.

이후 2023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하였고,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확충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다각적 정책을 펼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0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시행 2022. 3. 25.)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3년에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을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60,400GWh이며, 발전비율은 9.67%로 2018년 발전비율 9.03% 대비 0.64%p 증

가하였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비율]

(단위: GWh,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발전량	594,609	589,200	579,999	611,015	626,448	624,883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53,688	52,341	43,124	50,657	57,780	60,400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9.03	8.88	7.44	8.29	9.22	9.67

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총발전량) × 100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금액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확충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증대를 통한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022년)를 한 결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는 RE100 참여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용 부담’(35.0%)으로 나타났음.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비용인 점을 감안할 때 공급 증대를 통한 가격 인하를 도모함으로써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임.

둘째,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임.

정부는 2025년 2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건강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적 태양광 확산 등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확정하여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인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 발전시설 확충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은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³⁾되어 있어 R&D 세액공제(법 제10조) 및 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

13. 탄소중립

다. 신재생에너지

- 1)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 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 3)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 4)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전지 핵심소재 제조 및 대면적화 기술
-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 7) 풍력발전 블레이드 기술
- 8)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 9) 지열발전기술
- 10)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 11) 폐기물 액화·가스화 기술
- 12) 미활용 폐열 회수·활용을 통한 발전 기술
- 13)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
- 14) 고효율 n형 대면적 태양전지와 이를 집적한 모듈화 기술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제9조제6항 관련)

5. 수소

- 가.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 나.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 다. 수소연료 저장·공급장치 제조기술
- 바.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 사.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합투자세액공제(법 제24조)를 통해 관련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즉, 현행 법령 하에서도 일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투자 또는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부품 제작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공제율 대비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와 관련한 기술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활발한 국가재정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자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고,⁴⁾ 사업성이 부족한 초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을 직접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⁵⁾

셋째,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유형을 신설하는 것은 통합

차.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4)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4,263억원

5) 2025년도 확정예산 기준 340억 7,200만원

투자세액공제(법 제24조)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존에 존재하던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⁶⁾,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동일하게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음.

그런데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를 만드는 것은 투자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체계와는 방향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넷째,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국가안보 등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율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현행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6)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안전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등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개정안)	20	20, 30 ⁵⁾	30	10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5) (~3년)30%, (4년~)20%

문 의 처

02)6788-5154